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(이홍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-63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5 . .

발 의 자 : 이홍민, 권영숙, 김성희,
김영미, 김종선, 김진천

1. 제안이유
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사업의 적용범위(안 제4조)
- 라. 예산의 지원 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1. 5. 25.~ 5. 30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보호관찰 대상자 등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(이하 “대상자 등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
2.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
3.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의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

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 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대상자에 대한 제4조 조문상의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비 발생

[관련 조문]

제4조(사업)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
2.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
3.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의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분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김형신
연 락 처	02-3153-8805